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지 제7호서식] <신설 2024. 8. 27.>

##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* 예상이 어두군 간는 신청인이 작시 않는 접수번호		접수일시			처리기간		
거래스	별번호						
피해자 정보	성 명		생년월일				
	주 소				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	전자우	전자우편주소	
	금융회사		예금종류		계좌반	계좌번호 및 명의인	
	송금·이체 일시		금액				
피해금 (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)이 출금된 계좌 명의인 정보	성 명		생년월일				
	주 소				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	전자유	전자우편주소	
	금융회사		예금종류		계좌반	계좌번호 및 명의인	
	송금·이체 일시			금액	·		
피해금 (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)이	금융회사		입금계좌번호				
	명의인		입금일시		금액		
입금된 전자금융업자의 <u>계좌</u>							
※ 정보확인 요청사유	우 및 내용(구체적으로	적습니다)					
그 밖의 사항	담당자 성명		[위	연락	낙처		
	사기 피해 방지 에 따라 위와 같이			_	제 15조제 3형	· 및 같은 법 시행령	
금융회사 대표 (서명 또는 인)							
○ ○ 전자금융업자 귀하							
처리절차							
요청서 즉		요청서 접수	<b>→</b>	정보확인	<b>→</b>	통지	
금융회,	사	처리	리기관: 전자금융 <mark>업</mark>	자			